

수 원 지 방 법 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52563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3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이명애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	최선순위 설정	2023. 3. 23. 압류		배당요구종기	2025. 4. 4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 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 분	점유의 권 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윤지선	지층 비02호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2020.8.26.	103,000,000		2020.8.27.	2020.8.7.		
<p><비고> 주택도시보증공사 : 경매신청채권자로 임차인 윤지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임(대항력및우선변제권 승계)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5번 임차권등기(임대차보증금 103,000,000원, 전입일자 2020.8.27. 확정일자 2020.8.7.)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52563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7-45
[도로명주소]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92번길 34

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
1층 133.18㎡
2층 133.18㎡
3층 133.18㎡
4층 133.18㎡
지층 126.56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지층비02호
철근콘크리트조 60.52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7-45
대 393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대지권의비율 : 1. 393분의 39.02

감정평가액		120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2.24	120,000,000	12,000,000
2회	2026.03.30	84,000,000	8,400,000
3회	2026.04.29	58,800,000	5,880,000
4회	2026.06.08	41,160,000	4,116,000